

의안번호	제 42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6월 2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6월 29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재원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한편,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을 삭제(안 제2조)
-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(안 제5조)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10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바이오환경국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,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3. 기금운용 결산보고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금구성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</u></p> <p>6. <u>기금의 운용 수익금</u></p> <p>7. <u>그 밖의 수입금</u></p> <p>제5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 <u>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<u>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하되,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u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기금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삭제)</p> <p>5. <u>기금의 운용 수익금</u></p> <p>6. <u>그 밖의 수입금</u></p> <p>제5조(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         ----- <u>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바이오환경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,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</u></p>

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</li> <li>2. 기금운용 결산보고</li> <li>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</p> <p>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</li> <li>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</li> <li>3. 기금운용 결산보고</li> <li>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10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
--	--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